#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승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625 발의연월일: 2020. 9. 8.

발 의 자:조승래·강병원·고영인

박영순 • 박홍근 • 서영석

이용빈 · 최인호 · 최종유

홍정민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0.12.10. 시행예정인 「전기통신사업법」은 현행법의 부가통신역 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·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앱 마켓사업자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「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」이 법적 강제성이 없어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우월 한 지위를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행하는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앱 마켓사업자에게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,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,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 하여 앱마켓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의 9신설등).

##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7352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2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2조의9(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등) ① 앱 마켓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1. 앱 마켓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 · 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(이하 "앱 마켓"이라 한다)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(이하 "모바일콘텐츠 사업자"라 한다)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
  - 2. 앱 마켓사업자가 부당하게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지연시키거 나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을 앱 마켓에서 삭제하는 행위
  - 3.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
  - 4. 그 밖에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행위
  - ②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결제 및 환불과 관련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

다.

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사실을 조사하게 하거나, 앱 마 켓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실조 사, 자료제출의 절차와 방법 등은 제51조를 준용한다.

제92조제1항제1호 중 "제22조의7"을 "제22조의7, 제22조의9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7352호 전기통신사업법	법률 제17352호 전기통신사업법
일부개정법률	일부개정법률
<u>&lt;신 설&gt;</u>	제22조의9(앱 마켓사업자의 의무
	등) ① 앱 마켓사업자는 다음
	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
	<u>된다.</u>
	1. 앱 마켓사업자가 우월한 지
	위를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
	등을 등록・판매하고 이용자
	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
	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
	는 공간(이하"앱 마켓"이라
	한다)에 모바일콘텐츠 등을
	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
	<u>자(이하 "모바일콘텐츠 사업</u>
	<u>자"라 한다)에게 특정 결제</u>
	<u>방식을 강제하는 행위</u>
	2. 앱 마켓사업자가 부당하게
	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
	지연시키거나 해당 모바일콘
	텐츠 등을 앱 마켓에서 삭제
	하는 행위
	3.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 모

제92조(시정명령 등) 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 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 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 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2 바일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 도록 유도하는 행위

- 4. 그 밖에 거래상의 우월적 지 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- ②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 텐츠 결제 및 환불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.
-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 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사실을 조사하 게 하거나, 앱 마켓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실조사, 자료 제출의 절차와 방법 등은 제51 조를 준용한다.

제92조(시정명령	등) (1)

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 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.

1. 제3조, 제4조, 제4조의2, 제6 조, 제9조부터 제11조까지,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, 제22 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, 제 22조의7, 제23조, 제24조, 제2 6조부터 제28조까지, 제30조 부터 제32조까지, 제32조의3, 제32조의4, 제32조의6, 제32 조의7, 제32조의8, 제33조부 터 제35조까지, 제35조의2,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, 제47 조부터 제49조까지, 제51조,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, 제60 조의2, 제60조의3, 제61조, 제 62조, 제64조부터 제66조까 지, 제69조, 제73조부터 제75 조까지, 제79조 또는 제82조 부터 제84조까지, 제84조의2,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88조를 위반하거나 이들

1
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
<u>제</u> 22조의7, 제22조의9
<u> </u>

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	
경우	
2. • 3. (생 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